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나2158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나21584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9. 23 선고 2019가단8648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석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원

담당변호사 김기범

변론종결 2021. 12. 23.

판결선고 2022. 1. 13.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9. 23. 선고 2019가단8648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50/53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가 2019. 2. 12.에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9. 2. 20. 접수 제109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 1) D이 이 사건 건물의 등기권리증을 계속 보관하여 왔고, D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및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분은 D이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 2) 이 사건 지분이 B의 책임재산에는 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의 공동담보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 1)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D이 이 사건 건물의 등기권리증을 계속 보관하여 왔다는 피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2) 또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1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D이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2019. 11. 29. 피고 및 B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함을 이유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B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한 사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20. 6. 11. 피고의 자백간주에 의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인용하고 D의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20. 7. 22.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D이 이 사건 지분을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사실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3)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한, 판사 최희동, 판사 안철범

별지